

01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에는 무엇이 적히나

열 칸의 지도와 칸마다 정해진 글자 수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칸마다 정해진 것	3
03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학생부 **열 칸의 지도** — 무엇이 어디에 적히는가
- ◆ **칸마다 정해진 글자 수** — 세특 과목별 500자 · 창체 각 500자 · 행동특성 300자
- ◆ **학생부 I 과 II는 다릅니다** — 대학이 보는 것은 II입니다
- ◆ 처음 펼치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열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를 처음 펼치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칸이 많아 보이지만 열 칸이고,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열 칸부터 보시겠습니다.

칸	무엇이 적히나
1	인적·학적사항 이름·주소·학적 변동
2	출결상황 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눔
3	수상경력 교내상만
4	자격증 및 인증 재학 중 취득한 것
5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 동아리 / 진로 / 봉사
6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7	독서활동상황 책 제목과 저자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이 적는 종합 의견
9	학교폭력 조치상황 조치가 있는 경우
10	기타사항 졸업대장번호·전공·사진

이 가운데 대입에서 실제로 읽히는 칸은 훨씬 적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6. 3. 1.)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02 · 칸마다 정해진 것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모르시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마다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칸	최대 글자수	단위
자율·자치활동 특기사항	500자	학년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학년
진로활동 특기사항	500자	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과목마다
독서활동	공통 500 · 과목별 250자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학년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300자다. 담임이 한 해를 관찰하고 적는 칸이 그만큼이다.

A4 한 장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안에 한 아이를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

선생님이 쓸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이 적어 주세요」는 성립하지 않는 부탁입니다.

적을 자리를 놓고 학생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500자 안에 들어갈 만한 것이 무엇인지가 실제 문제입니다.

참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공통과목(공통국어·공통수학·공통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을 1·2 합산 500자 이내로 적는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한글 기준 최대 글자수. 교육정보시스템은 Byte로 세며 한글 1자는 3Byte.

03 ·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I 과 학생부 II

학생부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 I	줄여 놓은 것 — 발급받으실 때 흔히 보시는 것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II	세특과 특기사항이 다 들어 있는 것

전산에 넣는 내용은 같고 출력 서식이 다릅니다. 대학이 보는 것은 II입니다.

그러니 I 만 보시고 「우리 아이 학생부는 별거 없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II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남아 있나

학교생활기록부 I 과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II 가 있다. 전산 입력은 같고 출력 서식이 다르다. 준영구 보존하며 졸업 후 8년은 학교가 보관한다.

준영구입니다. 평생 남는 기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 적나

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사용자(교사)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해야 한다(제4조 제2항).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안을 써서 드리면 됩니까」는 규정에 어긋나는 물음입니다. 선생님이 본 것을 적는 칸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4조·제5조·제18조. 발급 방법은 학교와 정부24 등에서 안내합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펼쳐 놓고 볼 차례

차례	무엇을	왜
1	II를 받습니다	I에는 세특이 없습니다
2	비어 있는 칸을 찾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지 봅니다	과목별 500자 자리입니다
4	아이에게 읽혀 봅니다	본인 이야기인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4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잘 쓰였는지를 부모님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거 내 얘기 맞아」라고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처음 펼치실 때 여덟 가지

- ☐ 학생부 II를 받았는가 (I이 아니라)
- ☐ 칸이 열 개 인 것을 아는가
- ☐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가
- ☐ 창체 세 칸 이 다 채워져 있는가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있는가
- ☐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아이가 자기 이야기로 읽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없는가

여덟째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학년이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학년도가 지나면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L7에서 다룹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학생부를 한 번도 안 보신 채로 고3을 맞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기마다 한 번, 십 분이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십 분을 어디에 쓰실지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학생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생부를 어떻게 받아 보나요?

학교에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II」라고 말씀하십시오.

I 과 II 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학생부요」라고 하면 I 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는 세특이 없습니다.

정부24 같은 곳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서식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세특까지 보시려면 학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난 뒤에 보시면 늦습니다.

Q. 학생부 컨설팅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제20조의2)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라는 조언은 규정이 막아 둔 자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학생부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읽어 드리는 일은 값이 있습니다. 그건 이 자료로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값을 치르시기 전에 이 여덟 편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학생부는 열 칸이고 칸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이 보는 것은 II 이니 그것부터 받아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